



그린필드 시

주상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주 안전보건 코드 116900 준수)
2019 년 12 월

2020 년 2 월 1 일자로 시행
그린필드 시
캘리포니아, 그린필드
599 엘 카미노 레알

그린필드 시 주상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1. 목적

이 정책은 '물 차단 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998 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8 년 9 월 28 일 주지사가 승인했습니다(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 이하). 이 정책은 그린필드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 약관에 따라, 미지급 수도 서비스의 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면 831-674-2635 로 공공사업부에 전화하세요.

2. 시행일

이 정책은 2020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3. 다른 언어로의 게시

이 정책에 필요한 서면 통지는 영어, 그리고 민법 제 1632 조에 포함된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출판할 것이며, 시 상수도 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10 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도 출판할 것입니다.

4. 주거용 급수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요구 조건 선례

- A. 시는 고객이 60 일 이상 연체될 때까지, 미납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미지급 주택용수 서비스 중단일 7 일 전까지 계좌상의 고객에게 전화 또는 서면통지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B. 시가 제(A)호에 따라 계좌에 등록된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할 경우, 직원은 고객에게 이 정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시 직원은 대체 지급 일정, 이연 지급, 최소 지급, 미지급 잔액의 상각 요청 절차, 청구서 검토 및 항소를 포함하여 비급여에 대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C. 시가 제(A)호에 따른 서면통지로 계좌에 이름이 있는 고객에게 연락할 때엔, 지급연체 및 지급중단 임박통지서를 그 주소지로 고객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주소가 거주용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소가 아닌 경우, "현재 거주자" 주소지로서 거주용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소에도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외 기타 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의 이름과 주소.
 - (ii) 연체액.
 - (iii)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납부 또는 약정이 필요한 날은, 총지배인의 재량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체납된 날로부터 60 일이다.
 - (iv) 체납액 납부를 위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v) 청구서 검토 및 항소를 청원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i) 체납된 주거용 수도요금의 상각을 포함하여 고객이 이연, 감액 또는 대체 지급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 (vii) 시의 전화 번호와 시의 서면 정책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링크.

5. 통지

- A. 시가 전화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고객이나 성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우편으로 반송되는 경우, 시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눈에 띄는 장소에 비급여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이 임박하다는 통지와 시의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서류를 남겨야합니다.
- B. 고객이 청구서의 검토나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지불 기일 전에 시에 연락하여 시가 조사하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결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은 행정 서비스 책임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시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의회 회의 최소 7일 전까지 이의신청 시기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시는 상소가 보류 중인 동안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6.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금지

- A. 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주택용 급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 (I)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은 「복지 및 제도법」 제 14088 조 제 1 항 제 1 호 (b)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 차 의료 제공자의 인증서류를 시에 제출하여,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은 거주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II) 고객은 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고객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추가 보장 소득/주 추가 지급 프로그램 (Supple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 Program),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현재 수취인일 경우,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일 경우로 증명될 경우엔, 고객은 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거용수 서비스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III) 고객은 모든 연체료와 관련하여 상각약정, 대체지급일정 또는 이연 또는 감액지급계획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
- B. 위에서 열거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선택권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i) 미지급 잔액의 상각.
 - (ii) 대체 지급 일정에 참여.
 - (iii) 다른 요금 납부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자금을 조달한 미지급 잔액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iv) 일시 지불 연기.

- C. 행정서비스 책임자는 제 6.B 항에 기술된 지급에 관한 방안 중 어떤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잔여잔액의 상황이 12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지급옵션의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책임자가 미납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그 삭감 비용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삭감 전에 미리 Water Fund budget 에 옮겨진 비용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D. 주거용 수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인 경우, 시가 해당 거주지의 눈에 잘 띄고 두드러지는 장소에 서비스 중단의사를 최종 통지한 후 영업일 5 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60 일 이상 연체료에 대한 상각약정, 대체지급일정, 지급계획의 연기 또는 감액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 (II) 고객이 상각약정, 대체납부일정, 체납액에 대한 납부계획의 유예 또는 감액 등을 수행하면서도, 60 일 이상 현재 거주용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7. 수자원 복구사업

- A. 시는 미납으로 인하여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고객에게 주거용 수도 서비스 복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임을 시에 입증하는 거주고객에 대해서는,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 (I) 정상 운영 시간 동안 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또는 이보다 작을 경우엔 실제 연결 비용을 재연결하기 위한 서비스 수수료의 재연결을 설정한다. 시는 비운영시간 중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재연결을 위하여 1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 이용료 또는 비운영시간 중 실제 재연결(15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재연결비를 설정한다. 정상 운영 시간 중 재연결 시 최대 50 달러, 비운영시간 중 150 달러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경시 연간 조정대상이다. 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결정하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평균을 사용한다.
 - (II) 12 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준다.
- C.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추가 보장 소득/주 추가 지급 프로그램 (Supple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 Program),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또는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경우, 시는 거주 고객이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봅니다.

8. 임대인과 집주인의 관계와 관련된 서비스

- A. 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동식 주택의 거주자에게 개별 미터링된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 또는 구조물, 공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고객인 경우에, 해당 계정이 연체되었을 때, 서면 통지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하기 최소 10 일 전에, 시는 거주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면 통지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는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의 청구서를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 B. 시는 거주자 각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시의 조례, 결의, 규칙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엔, 거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거주자 중 1명 이상이, 시의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계좌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 서비스 책임자에게 거주 신청자가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시의 요건 충족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180 달러를 지급하고 서비스 신청을 완료 한 경우 및 이에 관련된 경우, 또는 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 대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시는 이용약관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9. 보고

시는 납부불능에 따른 주거서비스 중단 건수를 매년 시 홈페이지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0. 이 정책의 제한 사항

본 정책은 고객이 본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시가 해당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지하는 권한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이를 막지 않습니다. 또는 이 외에 고객이 어떤 허가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시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A. 고객은 시에서 제공한 청구서나 요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서 또는 요금이 발행 후 15 일 이내에 시 사무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 서비스 책임자가 들을 것입니다. 시는 이의신청 절차 중엔, 고객에 대한 급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